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제7호 중 “어장”을 “면허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의2호를 “양식장 등(마을 어장을 포함한다)을 활용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한다.

17.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제4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3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두며, 별표 32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물과학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46조 관련)

1. 제46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농업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⑪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u>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⑬ ~ ⑮ (생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16>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u>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u>
7의2.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	7의2. <u>양식장 등(마을어장을 포함한다)을 활용한 귀어·귀촌 활성화</u>
8. ~ 26. (생략)	8. ~ 26. (현행과 같음)
⑰ · ⑱ (생략)	⑰ · ⑱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 ~ ⑧ (생략)	제46조(한시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⑨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u>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3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
원에 두며, 별표 32의 정원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
다.